

2026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1차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에 근거하여, 2026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지역산업 및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의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역량 강화

☐ 예산규모 : 652억원(정부안 기준)

* 예산 규모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사업기간 : (일반) 선정 후 ~ '26년 7월말

(중대재해 및 탄소) 선정 후 ~ '26년 9월말

(재기컨설팅) '25년 11월 12일 ~ '27년 10월말

* 예산 규모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관리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 사업내용 :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분야별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기업별 정부지원금 50백만원 이내**)

* 메뉴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정부지원금+기업분담금)

** 일반, 탄소, 중대재해예방 등 바우처별 서비스 제공분야 및 사용가능금액 한도 상이

□ 추진절차



□ 신청대상 : 본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일반, 중대재해예방, 탄소중립 경영혁신 등 '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 참고

신청 제외 대상

-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또는 대표자
- ◆ 휴·폐업 기업
-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 신청한 분야에 대하여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공급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 신청 프로그램의 내용이 동 사업 및 타부처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경우
- ◆ 신청일 현재 '25년 동사업을 수행중(바우처 잔액 보유)인 기업
- ◆ 혁신바우처 사업을 총 5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재기컨설팅 바우처 신청제외 대상 기준은 본 공고 내 "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 참고

□ 신청기간 : '25. 11. 12(수) 10시 ~ '25. 12. 2(화) 18시

* 재기컨설팅 바우처는 '25. 11. 1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 모집 및 선정

- (접수마감)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온라인 시스템(혁신바우처플랫폼)에 신청서 제출을 완료해야 하며, 이후 추가 접수 불가
- (2차 모집) '26. 2월 이후 별도 공고 예정(지역성장바우처에 한함)

□ 신청방법 : 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 에서 신청

-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시 사업자 명의 공동인증서와 대표자 개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모두 필요

* 본 사업수행 사업장 기준으로 신청

- 동일 사업연도 내 동 사업 1회 참여 가능

□ 신청시 유의사항

- 아래 유의사항 확인 후 사업 신청 필요

신청 전 유의사항

◆ 선정 후 바우처 협약* 포기 시 차년도 사업 신청 불가

* 바우처 협약(중진공-수요기업) : 사업 선정 후 30일 이내 협약체결 및 자부담 납부완료

◆ 선정된 수요기업이 정해진 기간 내에 서비스 계약완료*를 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 및 차년도 신청 불가 처리될 수 있음

* 서비스 계약(운영기관-공급기업-수요기업) : 선정 후 50일 이내 체결완료

◆ 신청 및 최종선정 기업은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목적 취지에 맞게 성실하게 참여

◆ 사업 완료 후 수요기업이 정산하지 않을 경우, 수요기업 부담으로 서비스 대금 지급

◆ 별지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에 명시된 항목만 바우처 사용가능

◆ 타 정부지원사업(수출바우처, 해외지사화 등) 수행한 과업내용이 중복일 경우 신청불가

◆ 사업 신청 및 참여 중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리지침에 따라 참여 제한조치, 보조금 환수 및 정부 사업제재

2. 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

□ 일반 바우처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주 업종으로 하며 3년 평균('22년~'24년) 매출액 140억원 이하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 융복합 컨설팅의 경우 140억 이하 제조 소기업 중 2개사 이상 협업체를 구성하여 주관기업이 사업 신청 및 추진

- (지원내용)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8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분야별 각 1개씩 신청 가능하며, 선정된 프로그램 내에서 서비스 계약 1건이 원칙이며, 동시에 최대 2건까지 가능(바우처 잔액 사용 불가)

* 단, 융복합컨설팅 신청 시 협업승인 후 기술지원, 마케팅 분야 신청 가능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분야	프로그램	서비스 지원내용	한도 (백만원)
컨설팅	경영기술 전략	- 경영전략, 기술사업화 전략, 생산관리, 노무관리, 회계관리, 융복합 등	15
	AX·DX 컨설팅	- 스마트공장 진단 및 AX·DX실용화·활성화·고도화를 위한 전략 수립	50
기술 지원	시제품 제작	- CAD설계, 디자인 목업, 샘플금형, 공정설계, 시험생산 등	30
	시스템 및 시설구축	- 연구시설 구축, 스마트 공장 구축, 정보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20
	IP기반 기술사업화	- 지식재산권(IP) 획득 지원 (분쟁대응 포함) - 기술이전에 필요한 자문비 및 수행대행비 지원	15
	인증연구장비 활용시험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보안해킹, 웹/앱) 등 시험·인증·연구장비활용 - 제품 또는 품질 관련 국내인증 및 해외인증 취득 등	15
마케팅	디자인 및 브랜드 지원	- 제품 디자인, 포장디자인, BI 및 CI디자인 등	20
	홍보 및 광고 지원	- 기업·제품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카달로그, 홍보영상, 홈페이지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제품홍보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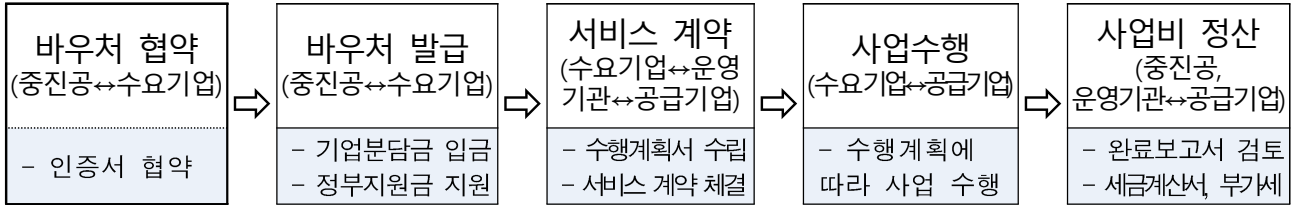
* 서비스 지원내용은 기업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세부 지원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은 혁신바우처플랫폼(mssmiv.com)에서 확인 가능

*** 한도는 정부지원금 기준 신청·지원한도를 의미하며 최대 50백만원

- **(바우처 이용절차)** 선정기업은 ① 바우처 협약 → ② 바우처 발급 → ③ 서비스 계약 → ④ 사업수행 → ⑤ 사업비 정산하여 서비스 지원 완료

* 바우처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이 별도 부담(사업비 정산 시)



- **(보조율)**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45 ~ 85%)

평균 매출액	정부지원 비율	자기부담 비율
3억원 이하	85%	15%
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75%	25%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65%	35%
50억원 초과 ~ 140억원 이하	45%	55%

* 지역에 따라 5~15% 정부지원금 비율 추가 적용(22P. [참고] 지방기업 우대 상세내용 참고)

- **(바우처 사용기간)** '26년 7월말까지 최종결과물 제출 ※ 사용기간 엄수

* 컨설팅 내 융복합 신청 시 9월말까지 최종결과물 제출

- **(신청서류)**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선정 제외

연번	구분	서류명	내용
①	필수	사업 신청서	온라인 작성
②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동의서	온라인 동의서 체크 및 인증
③		사업계획서	[별첨] 서식 활용하여 상세히 기술
④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기업 및 대표자
⑤		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	국세청 확인본
⑥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확인본
⑦	해당 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 미제출 업체

- **(가점사항)** 제출서류는 별도 없으며 가점은 서면평가 시 자동 반영

가점 대상	부여 가점
① 원자재 수입 영향 높은 기업 ② 소공인 직접지구 ③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단계 입주기업 ④ 지역혁신공모사업 선정지역에 소재기업 ⑤ 중소기업 챌린지진단 수진기업 ⑥ 진로제시 컨설팅 처방기업 ⑦ 특별·우대지역 소재 기업	각 1점, 최대 5점

○ (서류 구비 시 유의사항)

- (①~②) 신청서, 신용정보동의서 : 혁신바우처플랫폼 내 온라인 신청 및 정보제공 동의서 확인
- (③) 사업계획서 : 혁신바우처 플랫폼 업로드
- (④~⑦) 각종 민원증명자료는 원클릭 서비스* 활용 제출

* 원클릭 서비스의 사용 매뉴얼 및 링크주소는 혁신바우처플랫폼에(mssmiv.com) 공지되어 있으며, **민원증명자료는 해당 플랫폼으로만 제출**

** ⑤ 표준재무제표 증빙자료 법인·개인('22년, '23년, '24년) 제출

○ (평가절차) 서면심사 → AI진단·현장평가 → 지역별위원회 → 최종 선정

- (서면심사) 신청요건, 지원대상 여부 및 사업추진의 적정성 등 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현장평가 대상선정
- (현장평가) 혁신역량진단 및 현장평가 실시
- * 서면심사 결과 상위기업의 경우 현장평가 생략 가능
- (지역별위원회) 중기부, 중진공 및 외부전문가들로 구성하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최종 지원기업 선정

□ 중대재해예방 바우처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주 업종이 제조업*인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 (지원내용) 제조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2가지 분야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최소 10백만원 이상 필수(정부지원금 기준)이며, 이외에 중대재해예방에 필요한 기술지원* 프로그램 선택 가능

* 필수 프로그램 이외에 선택 사항은 1개 프로그램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선정기업은 필수 분야를 우선 사용해야 하며, 선택 프로그램의 경우 중대재해 예방과 연관성이 없는 과제 신청(서비스 계약) 시 바우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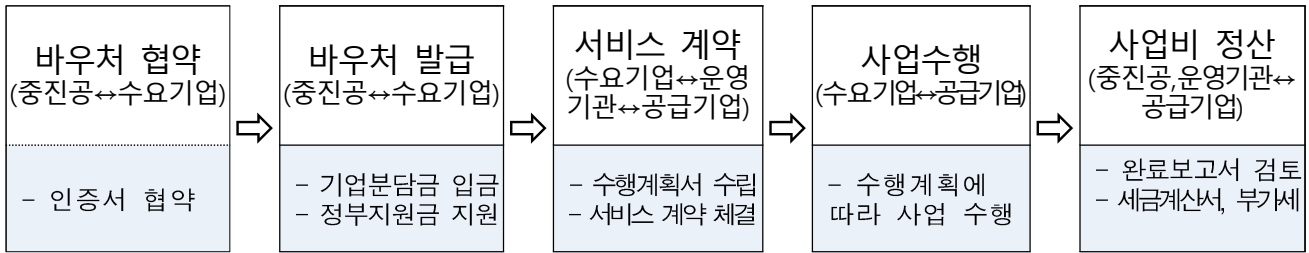
분야	프로그램	서비스 지원내용	한도 (백만원)
컨설팅 (필수)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 위험성평가, 공정안전관리, 근로자 건강장해예방, 화학물질관리 등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전략수립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	20
기술 지원 (선택)	시제품 제작	- CAD설계, 디자인 목업, 샘플금형, 공정설계, 시험생산, 안전장치 등 일반 및 중대재해 예방용 제품	40
	시스템 및 시설 구축	- 안전관리 시스템, 위험감지 경보시설 설치, 연구시설 구축, 스마트 공장 구축, 정보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인증·연구장비 활용시험	- 하드웨어(성능, 안전성, 신뢰성, 조달품 적합, 유해물질 분석, 자가품질검사), 소프트웨어(보안해킹, 웹/앱) 등 시험·인증·연구장비활용 - 제품 또는 품질 관련 국내인증 및 해외인증 취득 등	

* 서비스 지원내용은 기업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은 혁신바우처플랫폼(mssmiv.com)에서 확인 가능

*** 한도는 정부지원금 신청·지원한도를 의미하며 최대 50백만원

- (바우처 이용절차) 선정기업은 ① 바우처 협약 → ② 바우처 발급 → ③ 서비스 계약 → ④ 사업수행 → ⑤ 사업비 정산하여 서비스 지원 완료



* 바우처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이 별도 부담(사업비 정산 시)

○ **(보조율)**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40 ~ 85%)

평균 매출액	정부지원 비율	자기부담 비율
3억원 이하	85%	15%
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75%	25%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65%	35%
50억원 초과 ~ 140억원 이하	45%	55%
140억 초과 ~ 1,800억원 이하	40%	60%

* 지역에 따라 5~15% 정부지원금 비율 추가 적용(22P. [참고] 지방기업 우대 상세내용 참고)

○ **(바우처 사용기간)** '26년 9월말까지 최종결과물 제출 ※ 사용기간 엄수

○ **(신청서류)** 필수서류 미제출시 선정 제외

연번	구분	서류명	내용
①	필수	사업 신청서	온라인 작성
②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동의서	온라인 동의서 체크 및 인증
③		사업계획서	[별첨1] 서식 활용하여 상세히 기술
④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기업 및 대표자
⑤		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	국세청 확인본
⑥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확인본
⑦	해당 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 미제출 업체

○ **(가점사항)**

가점 대상	부여 가점
① 원자재 수입 영향 높은 기업 ② 소공인 직접지구 ③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단계 입주기업 ④ 지역혁신공모사업 선정지역에 소재기업 ⑤ 중소기업 챌린지진단 수진기업 ⑥ 진로제시 컨설팅 처방기업 ⑦ 특별·우대지역 소재 기업	각 1점, 최대 5점

○ (서류 구비 시 유의사항)

- (①~②) 신청서, 신용정보동의서 : 혁신바우처플랫폼 내 온라인 신청 및 정보제공 동의서 확인
- (③) 사업계획서 : 사업 신청서 작성 시 혁신바우처플랫폼 업로드
- (④~⑦) 각종 민원증명자료는 원클릭 서비스* 활용 제출
 - * 원클릭 서비스의 사용 매뉴얼 및 링크주소는 혁신바우처플랫폼에(mssmiv.com) 공지되어 있으며, 민원증명자료는 해당 플랫폼으로만 제출
 - ** ⑤ 표준재무제표 증빙자료 법인·개인('22년, '23년, '24년) 제출

○ (평가절차) 서면심사 → AI진단·현장평가 → 지역별위원회 → 최종 선정

- (서면심사) 신청요건, 지원대상 여부 및 사업추진의 적정성 등 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현장평가 대상선정
- (현장평가) 혁신역량진단 및 현장평가 실시
 - * 서면심사 결과 상위기업의 경우 현장평가 생략 가능
- (지역별위원회) 중기부, 중진공 및 외부전문가들로 구성하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최종 지원기업 선정

□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주 업종이 제조업*인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 고탄소 배출 10개 업종 중점 지원

고탄소 배출 10개 업종

- | | |
|---------------------|---------------------------|
| ① 1차 금속 제조업 | ⑥ 음료 제조업 |
| ②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⑦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 ③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⑧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 ④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 ⑨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 ⑤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⑩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 (지원내용) 중소기업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을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2가지 분야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최소 10백만원(정부지원금) 이상 필수이며, 기술지원* 분야는 선택

* 기술지원 분야는 기업당 지원한도 내에서 1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

** 선정기업은 필수 프로그램 우선 사용해야 함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분야	프로그램	서비스 지원내용	한도 (백만원)
컨설팅 (필수)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 탄소수준진단 : 에너지사용 현황 분석, 탄소역량강화 교육 등 - 심층컨설팅 : 공정개선 및 공정효율화, 탄소저감 목표설정	50
기술 지원 (선택)	시제품 제작	- 탄소저감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이용 효율화,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 등에 필요한 설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에너지 효율 향상 시스템 및 시설구축	- 전력수요 절감 효과가 우수한 효율향상 설비 시스템 설계 구축 지원	
	저탄소 인증 및 연구장비활용시험	- 제품 또는 기업이 친환경 평가기준, 환경 경영체제, 에너지 경영시스템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인증 지원 - 제품이 친환경, 신에너지원, 효율향상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 및 시험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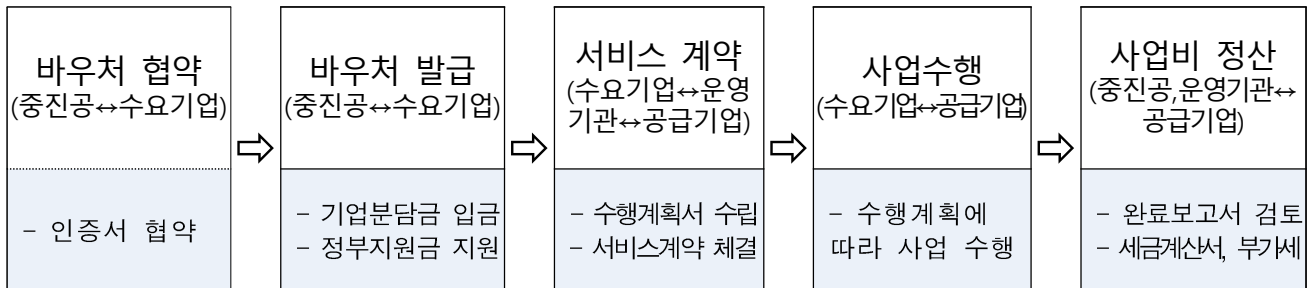
* 서비스 지원내용은 기업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은 혁신바우처플랫폼(mssmiv.com)에서 확인 가능

*** 한도는 정부지원금 신청·지원한도를 의미하며 최대 50백만원

- **(바우처 이용절차)** 선정기업은 ① 바우처 협약 → ② 바우처 발급 → ③ 서비스 계약 → ④ 사업수행 → ⑤ 사업비 정산하여 서비스 지원 완료

* 바우처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이 별도 부담(사업비 정산 시)



- **(보조율)**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40 ~ 85%)

평균 매출액	정부지원 비율	자기부담 비율
3억원 이하	85%	15%
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75%	25%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65%	35%
50억원 초과 ~ 140억원 이하	45%	55%
140억 초과 ~ 1,800억원 이하	40%	60%

* 지역에 따라 5~15% 정부지원금 비율 추가 적용(22P. [참고] 지방기업 우대 상세내용 참고)

- **(바우처 사용기간)** '26년 9월말까지 최종결과물 제출 ※ 사용기간 엄수

- **(신청서류)**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선정 제외

연번	구분	서류명	내용
①	필수	사업 신청서	온라인 작성
②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동의서	온라인 동의서 체크 및 인증
③		사업계획서	[별첨2] 서식 활용하여 상세히 기술
④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확인본
⑤		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	국세청 확인본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기업 및 대표자
⑦	해당 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 미제출 업체

○ (가점사항)

가점 대상	부여 가점
① 원자재 수입 영향 높은 기업 ② 소공인 직접지구 ③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단계 입주기업 ④ 지역혁신공모사업 선정지역에 소재기업 ⑤ 중소기업 챌린지진단 수진기업 ⑥ 진로제시 컨설팅 처방기업 ⑦ 특별·우대지역 소재 기업	각 1점, 최대 5점

○ (서류 구비 시 유의사항)

- (①~②) 신청서, 신용정보동의서 : 혁신바우처플랫폼 내 온라인 신청 및 정보제공 동의서 확인
- (③) 사업계획서 : 사업 신청서 작성 시 혁신바우처플랫폼 업로드
- (④~⑦) 각종 민원증명자료는 원클릭 서비스* 활용 제출

* 원클릭 서비스의 사용 매뉴얼 및 링크주소는 혁신바우처플랫폼에(mssmiv.com) 공지되어 있으며, 민원증명자료는 해당 플랫폼으로만 제출

** ⑤ 표준재무제표 증빙자료 법인, 개인 ('22년, '23년, '24년) 제출

○ (평가절차) 서면심사 → AI진단·탄소역량평가 → 지역별위원회 → 최종 선정

- (서면심사) 고탄소 배출업종, 탄소저감 계획 및 준비의 적정성, 지원효과 등 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현장평가 대상 선정
- (탄소역량평가) 사업 필요성, 참여의지, 에너지관리체계 등 평가

* 서면심사 결과 상위기업의 경우 현장평가 생략 가능

- (지역별위원회) 중기부, 중진공 및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하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최종 지원기업 선정

□ 재기컨설팅 바우처

- (지원대상) [별첨9]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신청 제외 대상

- ◆ 휴·폐업 기업
- ◆ 회생컨설팅사업 신청·접수가 거절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거절 사유가 해소된 경우는 가능)
- ◆ 회생컨설팅 사업 신청기업 중 별도의 조사위원이 선임된 경우
- ◆ 재기컨설팅 사업 공급기업으로 참여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 신청 시 재기컨설팅 사업을 수행중인(완료보고서 제출 전) 기업
- ◆ 회생컨설팅 프로그램을 1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기존 지원 시 회생인가가 되지 않은 경우는 가능)
- ◆ 워크아웃컨설팅 신청기업 중 실사 및 자구계획 작성이 완료되어 은행 관리절차 개시 또는 연장결과가 통보된 기업

- (지원내용) 진로제시컨설팅, 회생컨설팅 2가지 분야, 8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분야별 지원 프로그램]

구분	서비스프로그램	서비스 지원내용	한도 (백만원)
진로 제시	기초진로제시	해당기업의 향후 진로에 대한 맞춤형 처방 제시	10
	회생조기진입		
	재창업	재창업 지원 기업의 재기 성공을 위한 전략 제시	
	사업정리	전문분야별(법무, 노무, 세무 등) 사업정리 지원	
회생	Pre-회생	사전적 자율협상을 지원하여 조기 채무조정을 지원	30
	회생컨설팅	회생인가까지 필요한 절차대행, 전문가 자문 등을 지원	30
	개인회생컨설팅		2.4
	워크아웃컨설팅	워크아웃 기업의 실사·자구계획서 작성 비용 등을 지원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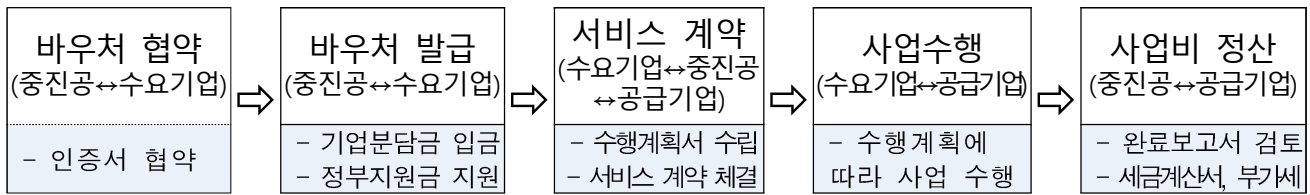
* 서비스 지원내용은 기업아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세부 지원내용은 공급기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은 혁신바우처플랫폼(mssmiv.com)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 한도는 정부지원금 기준 신청·지원한도를 의미하며 최대 30백만원

- (바우처 이용절차) 선정기업은 ① 바우처 협약 → ② 바우처 발급 → ③ 서비스 계약 → ④ 사업수행 → ⑤ 사업비 정산하여 서비스 지원 완료

* 바우처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이 별도 부담(사업비 정산 시)



○ (정부지원금 비율)

- 진로제시컨설팅 : 90%(자부담 10%)
- 회생컨설팅 : 회생컨설팅·Pre-회생·워크아웃컨설팅은 기업 자산 기준으로 차등 적용, 개인회생은 90%(자부담 10%)

자산 구간	회생컨설팅		Pre-회생	
	정부지원 비율	자기부담 비율	정부지원 비율	자기부담 비율
50억원 이하(간이회생)	90%	10%	90%	10%
50억원 초과 80억원 미만	72~90%	10~28%	90%	10%
8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62~90%	10~38%	85~90%	10~15%
12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52~77%	23~48%	72~90%	10~28%
2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43~63%	37~57%	59~88%	12~41%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37~54%	46~63%	51~76%	24~49%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33~49%	51~67%	46~68%	32~54%

○ (바우처 사용기간) '26년 11월말(진로제시), '27년 10월말(회생)

○ (신청서류)

연번	구분	서류명	내용
①	필수	사업 신청서	온라인 작성
②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동의서	온라인 동의서 체크 및 인증
③		사업계획서	[별첨] 서식 활용하여 상세히 기술
④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확인본
⑤		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	국세청 확인본
⑥	해당 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 미제출 업체
⑦		은행권 재기컨설팅 추천서	채권은행 작성([서식6] 참조)

*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선정 제외

○ (서류 구비 시 유의사항)

- (①~②) 신청서, 신용정보동의서 : 혁신바우처플랫폼 내 온라인 신청 및 정보제공 동의서 확인
- (③) 사업계획서 : 바우처 활용 계획 작성 후 혁신바우처플랫폼 업로드
- (④~⑥) 각종 민원증명자료는 원클릭 시스템*에 제출
 - * 링크주소 및 사용 매뉴얼은 혁신바우처플랫폼에(www.mssmiv.com) 공지되어 있음
 - ** ⑤ 표준재무제표 증빙자료는 법인·개인 ('22년, '23년, '24년) 제출
- (⑦) 은행권 재기컨설팅 추천서 : [별첨4] 제출
 - * (은행권 추천기업우대) 진로제시컨설팅 사전(현장)평가 면제, 회생컨설팅 가점부여

○ (평가절차) 서면 또는 현장평가 → 사업운영위원회 → 최종 선정

- (서면심사) 신청자격, 경영진 재기의지, 사업지원의 타당성 및 사업 계획 적정성 등 심사
- (사업운영위원회) 관리기관(중진공) 부서장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 하여 지원 적정성 최종 평가 및 지원 결정

3. 문 의 처

구분		연락처
일반, 중대재해예방 및 탄소중립경영혁신 바우처		1357, 1811-3655 (055-751-9783, 9588)
재기컨설팅 바우처	진로제시컨설팅	중진공 해당지역 관할 지역본·지부
	회생컨설팅 (중진공 재도약성장처)	02-3211-5611(수도권, 강원) 055-751-9624, 9627(그 외)
중소기업 지원플랫폼(민원증명서류)		02-3771-1100

* [별첨8] 중진공 지역본·지부 소재지 및 연락처 참조

별첨 1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신청 서식(일반, 중대재해)

【서식 1】 사업 계획서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계획서(일반 등)

1 혁신바우처 사업 추진 총괄책임자

업체명				대표자명	
책임자명		직 위		휴대전화	
최종학력 및 전공	(예시)대졸, 경영학	생년월일		이메일	
경 력	연 도	기 관 명		직 위	비 고
	~				
	~				
기타 특기사항	○ 수상경력 ○ 특허 출원 및 등록 등				

2 주요 생산제품 및 보유기술

제품용도 및 특성 (생산품 설명)	현재 주력 생산 제품의 용도 및 특성을 기재
제품생산 공정	주 생산제품의 생산 공정을 흐름순으로 기재
시 장 상 황 (주요 수요처, 경쟁업체 현황 등)	
기술품질 경쟁력 (국내외 경쟁사 제품과 기술 품질가격 비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기술에 대해 간략히 기술, 기술개발환경(기술개발 조직현황, 설비 보유 여부 등), 품질관리 현황 등 작성
지식재산권 및 인증 보유현황	지적재산권 출원/등록 및 인증현황 작성(증빙서류 제출불필요) 지적재산권은 특허, 상표권, 디자인 등을 전부 포함

3 추진목표

신청 분야별 적용 및 활용분야, 달성목표 등을 작성

4 신청내용

컨설팅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분야 중 수행하고자 하는 분야의 과제명(주제)을 작성. 신청하지 않는 분야는 삭제(ex.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원가분석 컨설팅)
기술지원	(ex. 모니터 전력 효율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마케팅	(ex. SNS, 비대면 홍보를 위한 홍보 동영상 제작)

5 추진일정[빗금색칠 혹은 Bar 표시]

기간	' 26년								
	2	3	4	5	6	7	8	9	10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6 지원효과

바우처 지원을 통해 기대되는 성과, 향후 매출로의 연계 가능성, 예상매출 성과, 고용창출 효과, 산업적 파급효과 등을 기재				
고용창출	고용 증가율	(%)	전년대비 고용 인원 증가율(%)	고용보험가입 인원 기준
	신규 고용인원수	(명)	인원 수	
매출증대	매출액 증가율	(%)	전년대비 매출액 증가율(%)	재무제표 기준
	매출 증가액	(천원)	전년대비 총매출액 증가액(천원)	
※ 기재한 예상 성과는 향후 완료점검 및 성과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음				

【별지 1】 융복합 컨설팅 협업계획서(‘컨설팅’-경영기술전략 내 융복합 신청희망 기업)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융복합컨설팅) 협업계획서

☐ 협업체 기본정보[신청시, 주관기업이 전담작성]

구 분		기 업 명	대표자	설립연도	매출액(천원)**	생산품
협업체 구성	주관기업*					
	참여기업***					

* 동사업의 주체가 되어 신청, 평가, 협약·계약 및 정산 등 진행(모든 평가는 주관기업 대상 실시)

** 매출액은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표준재무제표 증빙자료 법인·개인('22년, '23년, '24년) 제출)

*** 공급기업과 협업체 구성은 제한

☐ 협업 추진체계

기 업 명	역할분담	협업비중(%)	융·복합 공동기술개발(제품) 설명	
	예)생산		제품사진	상세설명
	예)마케팅			
	예)디자인			

☐ 공동협력방안

구 분	협 력 방 안			
제품개발 및 개선				
생산				
사업화				
협력모델	비즈니스모델	☐ B to B		☐ B to C
	판로대상	☐ B to G		
		국내		
		국외		

별첨 2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신청 서식(탄소경영혁신)

【서식 2】 사업 계획서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계획서(탄소)

1 혁신바우처사업 추진 총괄책임자

업체명				대표자명	
책임자명		직 위		휴대전화	
최종학력 및 전공	(예시)대졸, 경영학	생년월일		이메일	
경 력	연 도	기 관 명		직 위	비 고
	~				
	~				
기타 특기사항	○ 수상경력 ○ 특허 출원 및 등록 등				

2 주요 생산제품 및 보유기술

제품용도 및 특성 (생산품 설명)	현재 주력 생산 제품의 용도 및 특성을 기재
제품생산 공정	주 생산제품의 생산 공정을 흐름순으로 기재
시 장 상 황 (주요 수요처, 경쟁업체 현황 등)	
기술품질 경쟁력 (국내외 경쟁사 제품과 기술 품질가치 비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기술에 대해 간략히 기술, 기술개발환경(기술개발 조직현황, 설비 보유 여부 등), 품질관리 현황 등 작성
지식재산권 및 인증 보유현황	지적재산권 출원/등록 및 인증현황 작성(증빙서류 제출불필요) 지적재산권은 특허, 상표권, 디자인 등을 전부 포함

3 고탄소배출업종과의 연관성

기업의 주력 생산품 및 업종이 사업 공고문의 고탄소배출업종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 기업의 주 생산품, 산업분류코드 등을 기재하여 설명
※ 허위 기재 시 지원 제외 될 수 있음

4 추진목표

신청 분야별 적용 및 활용분야, 달성목표 등을 작성

5 신청내용

컨설팅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분야 중 수행하고자 하는 분야의 과제명(주제)을 작성. 신청하지 않는 분야는 삭제(ex.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원가분석 컨설팅)
기술지원	(ex. 모니터 전력 효율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마케팅	(ex. SNS, 비대면 홍보를 위한 홍보 동영상 제작)

6 추진일정[빛금색칠 혹은 Bar 표시]

기간	' 26년								
	2	3	4	5	6	7	8	9	10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7 지원효과

바우처 지원을 통해 기대되는 성과, 향후 매출로의 연계 가능성, 예상매출 성과, 고용창출 효과, 산업적 파급효과 등을 기재

고용창출	고용 증가율	(%)	전년대비 고용 인원 증가율(%)	고용보험가입 인원 기준
	신규 고용인원수	(명)	인원 수	
매출증대	매출액 증가율	(%)	전년대비 매출액 증가율(%)	재무제표 기준
	매출 증가액	(천원)	전년대비 총매출액 증가액(천원)	

※ 기재한 예상 성과는 향후 완료점검 및 성과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음

【별지2】 탄소중립 계획서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탄소중립 계획서

□ 사업장 에너지사용 현황

<사용연료 종류>

체크	연료 종류	비중(%)	체크	연료 종류	비중(%)
☐	전기		☐	LNG	
☐	LPG (취사용)		☐	스팀	
☐	경유(차량용 제외)		☐	차량용 경유 및 휘발유	
☐	기타(직접 기재) :				

<연간 에너지사용량>

연도별	연료 (Nm3)	스팀 (ton)	전력 (kWh)	기타
2023년				
2024년				
2025년 (10월까지)				

* 월별 고지서 합산 기준 연간 연료(LNG, 스팀, 전기 등) 사용량 기입

□ 에너지관리 현황 및 절감활동

구 분	내 용
에너지관리 현황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연료의 관리 방법을 기재 (고지서 수합 및 보관/ 고지서 데이터 전산화(excel 등 활용)/ 연간 사용량 관리 분석/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음 등)
에너지 고효율 설비/기술도입 현황	최근 5년 이내 에너지 개선을 위한 고효율 설비 및 기술 도입 현황
에너지절감 활동	과거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에너지절감 활동 혹은 노력을 기재 향후 에너지절감을 위한 투자계획이 있을 시 기재
탄소중립 준비현황	탄소중립 관련 기업의 준비현황 및 자체 전략 수립 여부 등 관련 내용 기재
기대효과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사용 후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절감 정도 등 기재

참고

지방기업 우대

□ 우대지원 대상

- 비수도권 167개 시군구를 특별지원·우대지원·일반지역 3단계 구분

- (특별지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중 균형발전 하위지역(58개), 예타 낙후도평가 하위 지역(58개)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40개 시·군
- (우대지원) 특별지원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농촌 인구감소지역 44개 시·군

* 지방시대위원회가 5년 주기로 균형발전지표(인구증감률, 고령화비율, 재정자립도 등)에 따라 심의·지정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

구분	우대지원 지역 (44개)	특별지원 지역 (40개)
인천	강화군, 옹진군	-
대구	군위군	-
경기	가평군, 연천군	-
강원	고성군, 삼척시,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횡성군	양구군, 화천군
충북	옥천군, 제천시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충남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예산군, 태안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전북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전남	담양군, 영광군, 영암군, 진도군, 화순군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신안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함평군, 해남군
경북	고령군, 문경시, 성주군,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봉화군, 상주시, 영덕군, 영양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거창군, 밀양시, 산청군, 창녕군, 함안군	고성군, 남해군, 의령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 우대지원 내용

- (내용) 특별·우대지원지역, 일반(비수도권)지역으로 구분하여, 기업 매출액 구간별 5~15%p 보조율 우대 지원(40~85% → 45~95%) 및 가점** 부여

평균 매출액	정부지원 비율				
	'25년	'26년			
	기준	수도권	일반(비수도권, 83개) +5%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우대(44개) +10%	특별(40개) +15%
3억원 이하	85%	85%	90%	95%	95%(cap)
3억원 초과~10억원 이하	75%	75%	80%	85%	90%
10억원 초과~50억원 이하	65%	65%	70%	75%	80%
50억원 초과~140억원 이하	45%	45%	50%	55%	60%
140억원 초과	40%	40%	45%	50%	55%

* 신청한 사업장 주소지 기준으로 적용됨

** 특별·우대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 서면심사 시 가점 1점 부여

별첨 3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신청 서식(재기컨설팅)

【서식 3】 사업 계획서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재기컨설팅) 계획서[수요기업용]

1. 회사연혁

년 월	주 요 내 용 (설립, 상호/대표자변경, 법인전환, 자본증자, 사업장/공장이전 등 주요사항 기재)

2. 대표자 경력

대 표 자	학 력	졸업연월	학 교	학 과(전공,계열)	졸업	수료	중퇴
	주요경력	기 간	근 무 처	근무처 업종	최종직위(담당업무)		
	동종업종 종사기간	년 개월	포상 및 상훈				

3. 주요 거래처

구분	업 체 명 (연락처)	거래품목	사업자 등록번호	거래비중 (%)	연간 거래액 (백만원)	거래기간	대금회수 기간
매 출 처	국내					개월	일
						개월	일
						개월	일
	해외					개월	일
						개월	일

4. 주주현황

(20 년 월 일 현재)

주주명	경영실권자 와의 관계	소유주식 금액(백만원)	비율	주주명	경영실권자 와의 관계	소유주식 금액(백만원)	비율

5. 주요 생산제품 및 보유기술

제품용도 및 특성 (생산품 설명)	현재 주력 생산 제품의 용도 및 특성을 기재
제품생산 공정	주 생산제품의 생산 공정을 흐름순으로 기재
시 장 상 황 (주요 수요처, 경쟁업체 현황 등)	
기술품질 경쟁력 (국내외 경쟁사 제품과 기술 품질가격 비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기술에 대해 간략히 기술, 기술개발환경(기술개발 조직현 황, 설비 보유 여부 등), 품질관리 현황 등 작성
지식재산권 및 인증 보유현황	지적재산권 출원/등록 및 인증현황 작성(증빙서류 제출불필요) 지적재산권은 특허, 상표권, 디자인 등을 전부 포함

6. 바우처 지원내용 및 추진계획

6-1. 수행 과제명

컨설팅	일반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분야 중 수행하고자 하는 분야의 과제명(주제)을 작성. 신청코자 하는 분야만 작성하고 신청하지 않는 분야는 삭제
	재기	

6-2. 과제개요

바우처를 지원받아 수행코자 하는 과제의 추진배경 및 목적, 수행과제에 대한 개괄적 소개, 용도, 기능, 사용처, 이미지, 목표시장 및 시장진입 가능성, 사업화 준비도 등을 작성

6-3. 필요성 및 차별성

바우처 지원에 대한 필요성, 시급성, 타 제품과의 기술, 디자인 등과의 차별성 등을 작성

6-4. 추진내용

신청 분야별 적용 및 활용분야, 추진계획, 추진 준비현황, 달성목표 등을 작성

6-5. 지원효과

바우처 지원을 통해 기대되는 성과, 향후 매출로의 연계 가능성, 예상매출 성과, 고용창출 효과, 산업적 파급효과 등을 기재

고용창출	고용 증가율	(%)	전년대비 고용 인원 증가율(%)	고용보험가입 인원 기준
	신규 고용인원수	(명)	인원 수	
매출증대	매출액 증가율	(%)	전년대비 매출액 증가율(%)	재무제표 기준
	매출 증가액	(백만원)	전년대비 총매출액 증가액(백만원)	

※ 기재한 예상 성과는 향후 완료점검 및 성과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음

7. 최근 3년간 정부 지원사업 및 과제참여 현황

과제명	주관부처	참여과제명	참여년월

8. 혁신바우처사업 추진 총괄책임자

성명		직위		휴대전화	
최종학력 및 전공	예시) 대졸, 경영학	생년월일		이메일	
경 력	연 도	기 관 명		직 위	비 고
	~				
	~				
기타 특기사항	○ 수상경력 ○ 특허 출원 및 등록 등				

9. 사업비 조성내역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기업분담금
100%	총 사업비 90%	총 사업비 10%

별첨 4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재기컨설팅) 지원대상 추천서

【서식 4】 은행권 재기컨설팅사업 지원대상 추천서

재기컨설팅사업 지원대상 추천서

1. 추천 대상기업 정보

기 업 명		대 표 자	
소 재 지			
담 당 자	부 서 :	성 명 :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업 종)			

2. 추천 의견 (해당시 √ 표시)

지원가능업종		경영위기기업
추천구분	① 진로제시컨설팅	
	② 회생컨설팅	

(기타 추천사유)

추천기업에 대한 기타 추천사유, 참고내용 등이 있는 경우 기재

예시) “ 구조조정대기업(0000) 협력사”

“ *** 등으로 경영애로”

3. 추천기관 담당자 연락처

담 당 자	부 서 :	성 명 :	(☎)
-------	-------	-------	------

위 중소기업을 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재기컨설팅사업 지원대상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 은행 ○○○○ 지점(부서)장

(서명 또는 인)

별첨 5

제조 소기업 규모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분류기호 “C”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평균매출액등 140억원 이하
2. 1차 금속 제조업	C24	
3.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4. 음료 제조업	C11	
5.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6.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담배 제조업	C12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7.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8.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9.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0.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1.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3.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1	
24. 기타 제품 제조업	C33	
25.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5억원 이하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따른다.

** 위 표에도 불구하고,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은 지원 불가

별첨 6

제조 중기업 규모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분류기호 “C”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평균매출액등 1,800억원 이하
2. 1차 금속 제조업	C24	
3. 전기장비 제조업	C28	
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6. 가구 제조업	C32	
7.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0억원 이하
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9.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3.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1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14. 담배 제조업	C12	
15.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7.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8.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9. 기타 제품 제조업	C33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0. 음료 제조업	C11	
21.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2.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4.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25.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따른다.

** 위 표에도 불구하고,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은 지원불가

별첨 7

평균 매출액 산정 기준

□ 평균 매출액 산정 방법

- 법인 및 개인 : 평균매출액은 직전 사업연도 3년간('22년 ~ '24년 표준재무제표 기준)의 매출액 평균으로 산정

설립일자별 구분 (창업·합병·분할일)	평균 매출액 산정방법
'22년.1.1 이전 설립 기업	- '22년, '23년, '24년 매출액 합계를 3으로 나눈 금액
'22년 설립	- '23, '24년 매출액 합계를 2로 나눈 금액
'23년 설립	- '24년 매출액
'24.1월~'24.11월 설립	- '24년 매출액을 '24년 영업월수'로 나눈 후 12를 곱한 금액 * 영업월수 : 설립월의 다음달부터 설립연도의 12월까지의 개월 수
'24.12월 설립	- '24년 매출액을 설립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25년 설립기업	- 평균 매출액 예상액 기입('25년 표준재무제표 발급 전)

☞ 매출액 산정 예시(개인)

- 2022.3.14에 창업(합병, 분할)한 기업의 평균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
 - '22년, '23년, '24년 매출액의 합을 3로 나눈 금액을 평균매출액으로 함
- 2024.3.14에 창업 또는 합병한 기업의 평균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
 - '24년 매출액을 9(4월~12월)로 나눈 후 12를 곱한 금액을 평균 매출액으로 함
- 2024.12.14에 창업 또는 합병한 기업의 평균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
 - '24년 매출액을 12.14부터 12.31까지의 18일로 나누어 1일 평균 매출액을 구하고, 1일 평균매출액에 365를 곱하여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평균 매출액으로 함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소재지

지역본(지)부		주소	전화번호
서울 인천	서울지역본부	서울 중구 무교로21(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5층	02-769-6423
	서울동부지부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558(신천동) 월드타워빌딩 10층	02-2013-9851
	서울서부지부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1(가산동) 가산W센터 413호	02-2106-7413
	서울남부지부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서초동)한국벤처투자빌딩 1층	02-2023-4313
	인천지역본부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송도동 7-50), 갯벌타워 14층	032-837-7031
	인천서부지부	인천 서구 봉수대로 806,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3층	032-560-2363
경기 강원	경기지역본부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이의동) 경제과학진흥원 11층	031-260-4923
	경기동부지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야탑동) 코리아디자인센터 203호	031-760-9004
	경기서부지부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43(고잔동, 1층(신용보증기금 빌딩)	031-783-0617
	경기남부지부	경기 화성시 봉담읍 동화길 51 봉담원희캐슬 4층 431-434호	031-899-9115
	경기북부지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38(백석동) 일산테크노타운 관리동 102호	031-920-6736
	강원지역본부	강원 춘천시 중앙로 54(중앙로2가) 우리은행빌딩 5층	033-269-6943
대전 충청	강원영동지부	강원 강릉시 경강로 2110 동아빌딩 8층	033-649-9376
	대전지역본부	대전 서구 청사로 136(월평동) 대전무역회관 15층	042-281-3725
	세종지역본부	세종 한누리대로 320, 리치먼드시티 2층 (나성동)	044-860-8307
	충남지역본부	충남 천안시 북구 광장로 215 (불당동 1418)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4층	041-589-4587
	충북지역본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가경동) 충청북도기업진흥원 4층	042-230-6834
광주 전라	충북북부지부	충북 충주시 변영대로 200(연수동) 2층	043-841-3613
	광주지역본부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84(치평동) 상무트윈스빌딩 6층	062-600-3066
	전북지역본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효자동3가) 전주상공회의소 4층	063-210-9943
	전북서부지부	전북 군산시 대학로 331(나운동) 한화생명빌딩 4층	063-460-9812
	전남지역본부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2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4층	061-280-8043
대구 경북	전남동부지부	전남 순천시 장명로 18(장천동) 순천상공회의소 3층	061-729-1556
	대구지역본부	대구 북구 엑스코로 10(산격동) 대구전시컨벤션센터 4층	053-606-8433
	경북지역본부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임수동), 경상북도경제진흥원 5층	054-440-5912
	경북동부지부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 (지곡동) 포항테크노파크 112호	054-288-7343
	경북남부지부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삼풍동300) 경북테크노파크 본부동 501호	053-603-3321 053-603-3322
부산 경남	부산지역본부	부산 진구 중앙대로639, 23층(엠디엠타워)	051-630-7414 051-630-7413
	부산동부지부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99(재송동) 벽산e-센텀클래스원 201~202호	051-745-5923
	울산지역본부	울산 남구 삼산로 274 (삼산동 1479-5) W-Center 14층	052-703-1123
	경남지역본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3층	055-270-9755
	경남동부지부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16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4층	055-310-6626
	경남서부지부	경남 진주시 영천강로 167(충무공동) 이노휴먼씨티 3층	055-751-2903
제주	제주지역본부	제주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2동) 제주경제통상진흥원 3층	064-754-5157

□ 관할구역

중기부 지방청	중진공 지역본·지부	주 관할구역
서울	서울	중구 ,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랑구
	서울동부	강동구, 광진구, 송파구
	서울서부	금천구 ,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동작구, 영등포구
	서울남부	서초구 , 강남구
인천	인천	연수구 , 계양구, 남동구, 부평구
	인천서부	서구 , 동구, 미추홀구, 중구, 강화군, 옹진군
경기	경기	수원시 , 안성시, 용인시, 과천시,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경기동부	성남시 , 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이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경기서부	안산시 , 시흥시, 광명시
	경기남부	화성시 , 평택시, 오산시
	경기북부	고양시 ,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김포시, 부천시
대전 세종	대전	대전시 , 계룡시, 논산시, 금산군
	세종	세종시 , 공주시, 청양군,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충남	충남	천안시 , 서산시, 아산시, 당진시,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
충북	충북	청주시 ,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진천군, 증평군
	충북북부	충주시 ,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음성군
강원	강원	춘천시 , 원주시, 양구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강원영동	강릉시 ,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고성군, 양양군

중기부 지방청	중진공 지역본부	주 관할구역
전북	전북	전주시 ,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정읍시, 익산시, 김제시
	전북서부	군산시 , 고창군, 부안군
광주· 전남	광주	광주시 ,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전남	무안군 , 목포시, 강진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
	전남동부	순천시 , 광양시, 여수시,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제주	제주시 , 서귀포시
대구· 경북	대구	대구시
	경북	구미시 ,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고령군, 봉화군, 성주군, 예천군, 의성군, 칠곡군
	경북동부	포항시 , 경주시,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울진군, 청송군
	경북남부	경산시 , 영천시, 청도군
울산	울산	울산시
부산	부산	부산진구 , 강서구, 동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영도구, 중구
	부산동부	해운대구 , 금정구, 남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기장군
경남	경남	창원시 ,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경남동부	김해시 , 밀양시, 양산시
	경남서부	진주시 , 거제시, 사천시, 통영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 : 중진공 지역본부 소재 구역

별첨 9

재기컨설팅 바우처 지원 제외 업종

업종 분류	산업분류코드	지원제외 업종
제조업	33402 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건설업	41 ~ 42	건설업(단,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환경설비 건설업(41224), 조경 건설업(41226),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42201),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42203), 소방시설 공사업(42204), 전기 및 통신공사업(423)은 지원가능 업종)
도매 및 소매업	46102 中	담배 중개업
	46~47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주류, 담배 소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단, 주류 중개업 면허보유 기업은 지원 가능)
	47859 中	성인용품 판매점
	47993 中	다단계 방문판매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정보통신업	58 中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정보서비스업	63999 中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63999-1)
금융 및 보험업	64 ~ 66	금융 및 보험업(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은 지원 가능)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7151	회사본부
수의업	731	수의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75999 中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임대업	76390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851~854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855~856 中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보건업	86	보건업 (단,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원 가능)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협회 및 단체	94	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97 ~ 98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